

학칙 개정(안)

가. 제안이유

- 1) 정부의 대학관리정책의 방향에 맞춰 대학 조직 기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직 개편 시행
- 2) 취업률 향상 지수 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의 필요성 및 부서 추진 업무의 핵심내용을 부서 명에 표기 하도록 함
- 3) 대외 홍보 및 협력업무를 강화하여 대학 브랜드 가치의 상향화 추진 필요
- 4) 글로벌 인재육성 및 국제화 사업업무의 공격적 추진을 위한 본부조직 개편

나. 주요내용

- 1) 산학협력처 산학취업팀을 취업지원처 취업지원팀으로 조직 개편
- 2) 기획조정처 홍보전략팀을 대외협력처로 확대 설치
- 3) 국제화사업 업무를 전담할 본부내 국제교류처 신설
- 4) 산학협력처 현장실습팀을 산학협력단내의 산학실습팀으로 조직 및 명칭변경

다. 주요토의과제

라. 참고사항

- 1) 관계법령 :
- 2) 예산조치 :
- 3) 합 의 :
- 4) 기 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(별첨)

【별첨】 학칙 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조직) ① 우리대학에는 대학교당, 기획조정처, 교무처, 입학관리처, 학생복지처, 총무처, 산학협력처, 비서실, 산학협력단, 총장직속기구로 산학협력선도전문대학(LINC)사업단, 평가관리실을 두며, 각 처에 두는 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(생략) 2. 기획조정처에는 <u>기획조정팀,홍보전략팀</u>을 둔다. 3. ~ 5. (생략) 6. (신설) 7. (생략) 8. (신설) 9. (생략) 10. 산학협력처에는 산학취업팀, 현장실습팀을 둔다 11. 산학협력단에는 <u>사업운영팀,학교기업사업단</u>을 둔다. 12. (생략)	제7조(조직) ① ----- ----- <u>학생복지처, 대외협력처, 국제교류처, 취업지원처, 총무처,</u>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<u>기획조정팀</u>을 ----. 3. ~ 5. (현행과 같음) 6. <u>대외협력처에는 홍보전략팀을 둔다.</u> 7. (현행과 같음) 8. <u>국제교류처에는 국제협력팀을 둔다.</u>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취업지원처에는 취업지원팀</u>-----. 11.산학협력단에는 <u>사업운영팀,산학실습팀</u>, 학교기업사업단을 둔다. 12. (현행과 같음)
	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